

	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29
		제정일자	1998.01.31.
		개정일자	2021.03.01.
		개정차수	6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새빛학원 정관 제40조의 6에 의거 안산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직급이 교수인 7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③ 정년보장 임용결정을 위한 의결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 및 연구능력
2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3.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 능력과 자세
4.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준법정신
5. 국가 및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나 참여도

제6조(정년보장 임용 교원의 정수) ①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편제정원기준 교원법 정정원의 100분의 18로 한다.

② 정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제7조(정년보장 임용대상)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수
2.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교원

제8조(정년보장 임용 제외자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교원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2. 국가 공무원법 제70조의 당연 면직 해당자

제9조(심사자료 제출과 심의) ① 총장은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업적 보고서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대상자만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한다.

제10조(연구실적물 심사) ① 연구실적은 심사대상자의 상위직 전공분야 교수 3인이 심사하되,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중 1인은 타대학 소속의 교원으로 한다.

② 석사·박사학위 논문, 국제학회지 게재논문, 전국규모의 학회지 등에 게재된 논문 등은 심사를 생략한다.

제11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